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11 발의연월일 : 2025. 3. 24.

발 의 자: 박해철·한준호·송옥주

임미애 • 박지원 • 강유정

한민수 · 권향엽 · 정일영

손명수·김 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 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주택의 기준시가"를 "기준시가"로, "주택을 취득하기"를 "주택(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)을 취득하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특별소득공제) ① ~ ④	제52조(특별소득공제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	5
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	
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	
대주(세대주가 이 항, 제4항 및	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제2	
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	
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	
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,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	
포함한다)가 취득 당시 제99조	
제1항에 따른 <u>주택의 기준시가</u>	<u>기준시가</u>
가 6억원 이하인 <u>주택을 취득</u>	
<u>하기</u>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	오피스텔을 포함한다)을 취득
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	하기
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	
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	
당차입금(주택을 취득함으로써	
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	
을 포함하며, 이하 이 항 및 제	
6항에서 "장기주택저당차입금"	

이라 한다)의 이자를 지급하였 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 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 항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 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(차입 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, 이하 이 항 및 제6항 에서 "공제한도"라 한다)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1.	\sim	5.	(생	략)
<u>(6)</u>	~	(11) (생	랴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⑥ ~ ⑪ (현행과 같음)